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73879(본소), 2020나7388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광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수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1. 12. 22.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가소153833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원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981,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의,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391,4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270,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피고 차량’)의 운전자이자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9. 1. 10. 11:00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과천방향 터널 내 오른쪽으로 굽은 램프 구간을 지나가다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오른쪽 터널 벽을 충격하고 180도 회전하여 정지하였다(‘1차 사고’).

다. 원고 차량은 위 도로에서 진행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2차 사고’).

라. 위 사고로 피고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어 2019. 1. 10. 응급치료를 받고, 2019. 1. 11.~2019. 1. 24. 14일간 입원치료와 2019. 2. 25.~2019. 3. 15. 2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9. 4. 23.까지 피고의 치료비 전액인 3,424,680원을 병원에, 피고 차량 수리비 5,890,365원 중 1,790,000원을 차량수리업체에 각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6. 27. 피고 차량의 부보회사(C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상당액 1,000,00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11~13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1차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2차 사고는 터널 내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의 과실 40%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60%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1, 2차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50%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전체의 30%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피고

1차 사고는 피고 차량이 180도 회전하여 정차한 것일 뿐 그로 인한 충격이나 피해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전체 손해액 중 2차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에 상응하는 70%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기초 판단’ 및 ‘2.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사고 발생 장소는 노면이

얼어붙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도로 상태에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서행하거나 얼어붙은 노면 부분을 피하여 운행하여 도로에서 미끄러져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차량 제어에 실패하여 도로 상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1차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오른쪽 앞부분으로 터널 벽을 충격한 뒤 회전하였고, 사고 후 피고가 2019. 7. 2. 인터넷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도 "제 차가 미끄러지면서 터널을 충돌하였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라고 써 있어, 1차 사고로 인한 충격과 피해가 상당한 정도였다고 판단되는 점, ③ 원고 차량 운전자는 도로가 얼어붙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주행하다 차량 제어에 실패하여 2차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1, 2차 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일련의 연쇄사고로, 1차 사고로 피고 및 피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가 2차 사고로 확대되었음이 명확하고, 전체 손해 중 1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한미, 판사 조정환, 판사 오승이